

(붙임 1)

##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

### 1. 정관변경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신청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정관 목적사항에 추가함.

### 2.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3. 부동산 및 증권 펀드의 운용 4. 경영자문 및 컨설팅 업무 5.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3.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 4.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5. 부동산 및 증권 펀드의 운용 6. 경영자문 및 컨설팅 업무 7.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부칙	변경안 시행일 2026년 03월 30일	